

춘천지방법원 2021. 6. 17 선고 2019나530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1. 6. 17 선고 2019나53058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19. 7. 18 선고 2017가단5413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성길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원

담당변호사 오정익

변 론 종 결 2021. 5. 13.

판 결 선 고 2021. 6. 17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7가단5413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송수관로들에 A 2016. 8. 일자불상 인수계약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도로점용허가권에 관하여 2016. 8. 일자불상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2016. 9. 21. 승계절차가 완료된 같은 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송수관로들을 주식회사 C에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도로점용허가권들을 주식회사 C에로의 도로법령에 의한 권리 의무 승계를 위하여 같은 허가권들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, 판사 송종선, 판사 이은상

별지